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운동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담회

□ 사업개요

-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15:00 ~ 18:00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7층(교육실)
- 참여대상 :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 등
- 주요내용
 - 1)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운동 설명 및 질의응답
 - 김은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전정식/자립생활대학 학장)
 - (2) 수원시 현황 및 방향(김진규/수원IL센터 소장)
- 주 관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 시간계획

구분	시 간		소요 (분)	내 용
	부터	까지		
접 수	14:30	15:00	30	○ 등록 및 접수
개 회	15:00	15:1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SECTION I	15:10	16:10	60	○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운동 - 김은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
	16:10	16:30	20	○ 참석자 자유토론
SECTION II	16:30	17:30	60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명 - 전정식(자립생활대학 학장)
	17:30	17:45	15	○ 수원시의 현황 및 방향 - 김진규(수원IL센터 소장)
	17:45	18:00	15	○ 참석자 자유토론
폐 회	18:00	18:15	15	○ 폐회 및 다함께 정리



무장애도시 운동과 철학

김 은 희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

편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도시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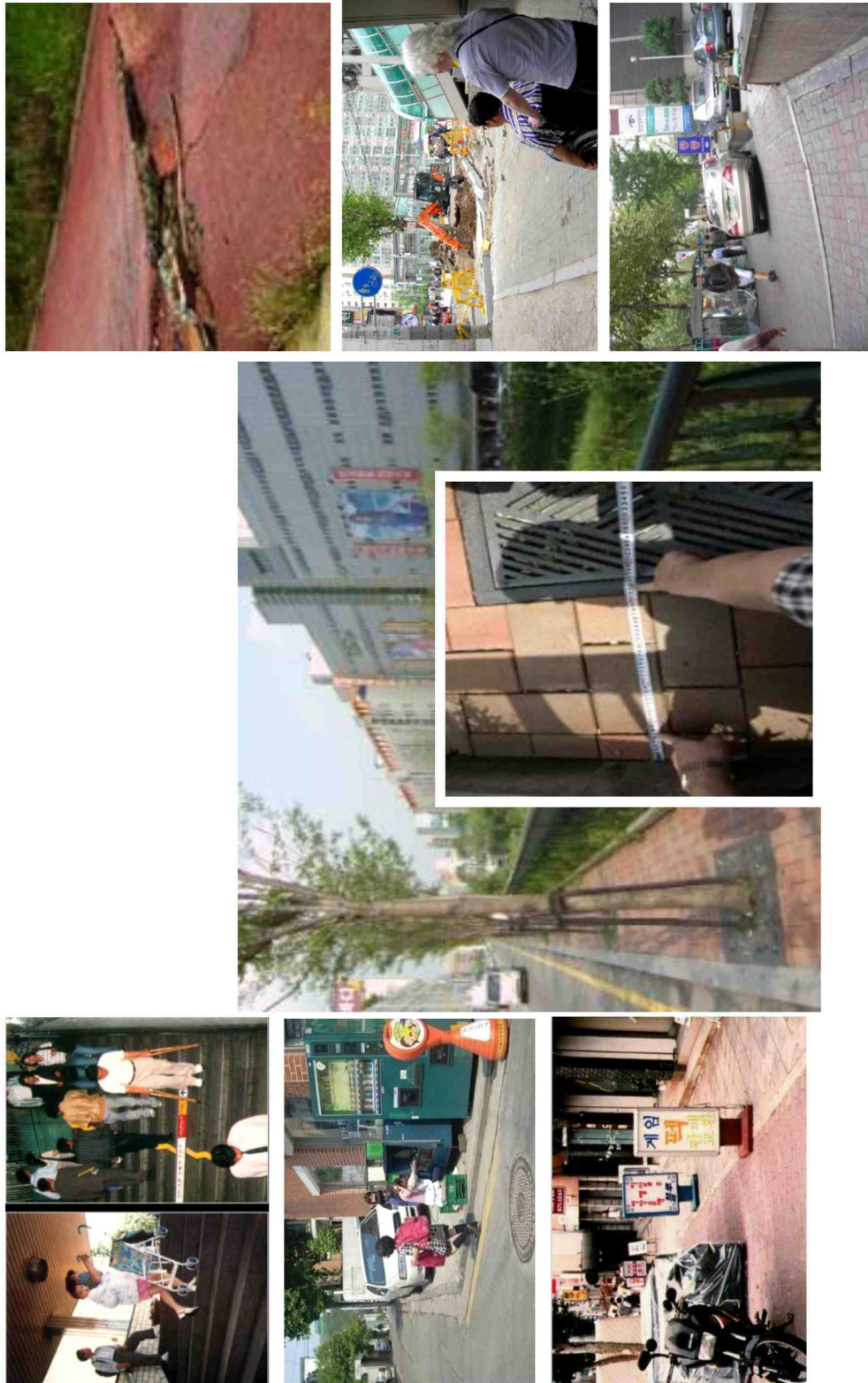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시
노인과 장애인에게 친절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문화를 느낄수 있는 도시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1. 무장애 도시는...

- 무장애도시만들기는 시설물중심의 정비사업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강자와 약자, 사회적 주류와 약자간의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제거되는 것
- 또한 당사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통합 실현
- 이에 무장애도시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환경개선이 통합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 조성

귀찮음, 불편함, 무의미함, 무장애 도시의 가능성은
'다름'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1. 우리 도시, 견고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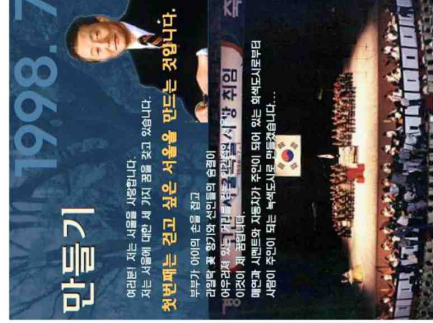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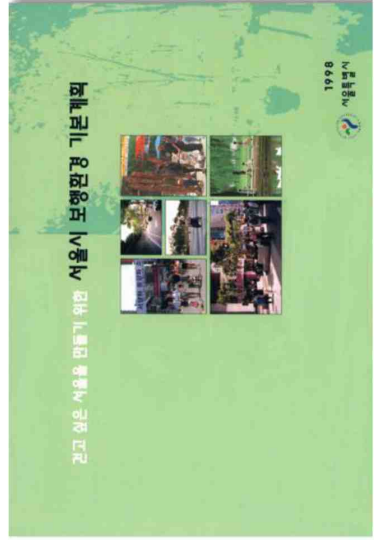






2.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 - 보행조례만들기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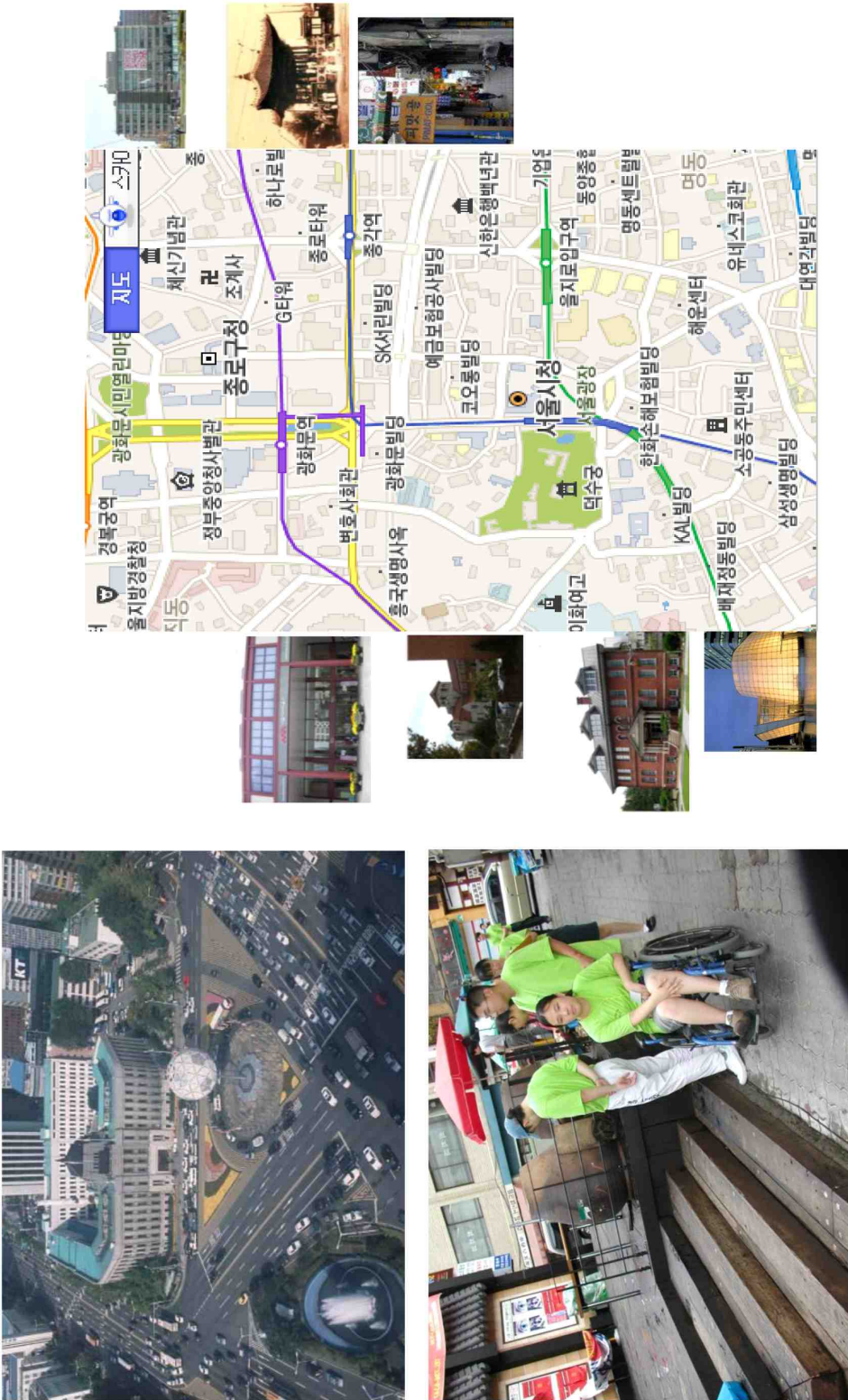
- 도시연대 제안 / 서울시,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결합
-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운동
-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1997년) / 세계최초의 보행조례
- 서울시보행환경5개년기본계획수립
- 서울시 주요 정책으로 전환
- 횡단보도 설치,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시범사업 등
- 보행기본법 추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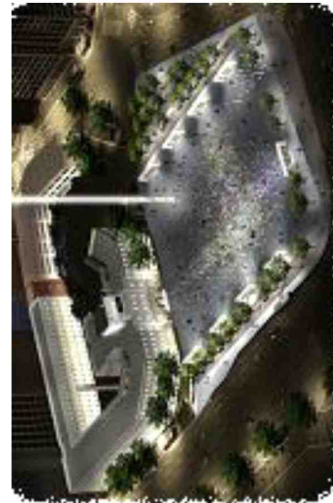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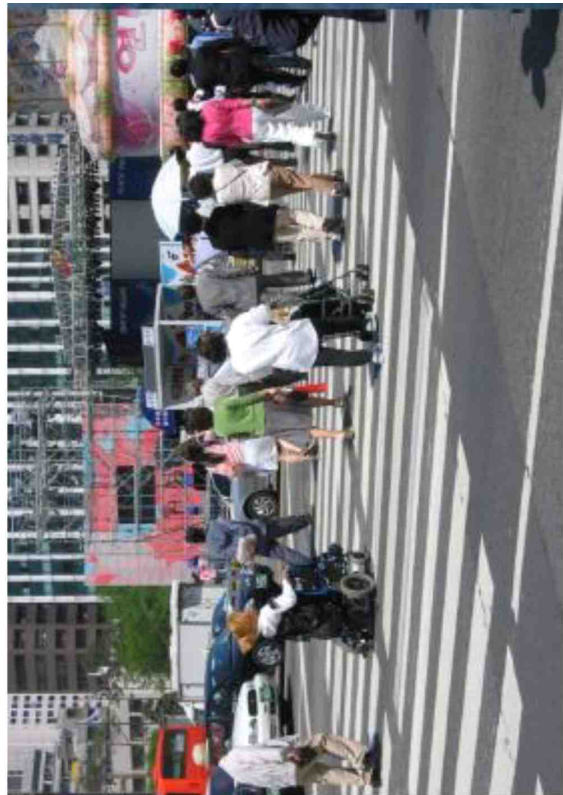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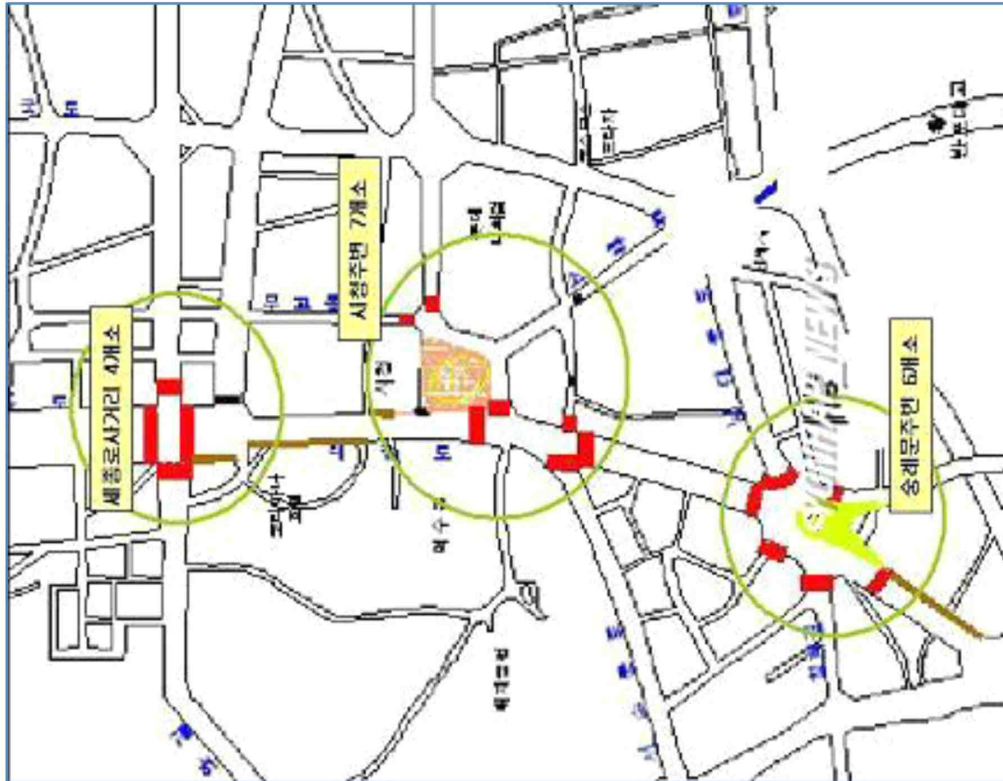
3. 권고사항은 서울만들기 운동 - 시청앞 보행자광장 만들기 (1996년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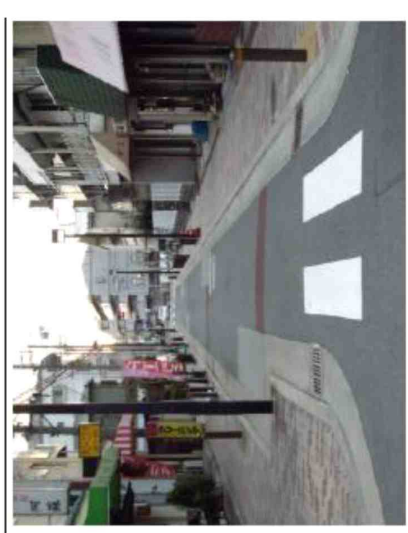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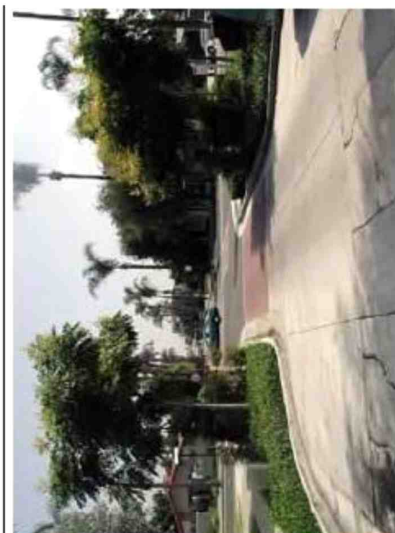
- 서울시청앞 보행자광장 요구
 - : 승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상징가로의 출발
 - :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결합
 - : 1997년부터 서울시, 경찰청, 전문가, 도시연대의 논의 진행 및 결렬
 - : 2002년 월드컵 이후 도시연대의 재 요구
 - : 2003년 서울시 수용·광장조성
 - : 디자인 과정 문제 발생, 잔디광장으로 서울시 일방적 추진
 - : 광장사용조례에 대한 반대 제기, 일부수정했으나 서울시안대로 통과











무장애 도시에서는 유모차와 휠체어가 친구다

1. 부평 문화의 거리 상가 경사로 만들기 (2008년)

-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상인들에 의해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시작 (1997년)
- 상인회와 도시연대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난제들 해결 (1998년 - 현재)
 - : 노점상 관리제 도입 (노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 제시를 통한 공존방안 마련)
 - : 옆거리 확대를 통한 문화의 거리 가치 확산
- 전국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결성 (대자본에 대응하는 상업가로만들기)
- 사람을 존중하는 거리만들기에 대한 전환
 - : 상가 경사로 조성 (14개 상가 합의를, 일부 자부담)
- 주요 논의내용
 - : 상인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 : 70년대 건축물에 법정 규격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 : 상가 적치물 한계선을 존중할 것인가
 - : 경사로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 : 시공은 언제 할 것인가



2. 소규모 자전거 보관대 만들기 (2007-2008년)

- 도시연대의 한평공원만들기와 결합
- 부평상인들 중심의 자전거 운동본부 활동 지원
- 상업지에 가능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인식
 - : 역주변, 관공서 주변의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 부적합
 - : 가계앞 소규모 자전거 보관대의 시도
- 부평문화화의 거리에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증가
- 자전거 대행진에 휠체어가 선두에 위치
 - : 자전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선언하는 것





장애물 없는
디자인이 전제된다
무장애 도시는
가능하다

Social Mix? 주인으로 살고, 이웃으로 인정하기

천안시 쌍용아파트







시혜적 복지에서 지역복지로

중랑구 신내 10단지
강서구 방화6단지

1. 신내10단지 - 연두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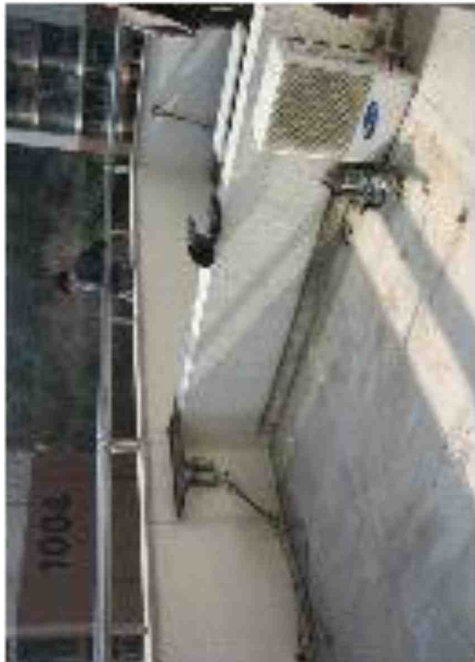
- 복지관은 외부의 개방공간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폐아동이나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치료/미술치료' 공간으로서의 조성 요구

 - 자폐아동 · 청소년이 모래를 만지고 놀 수 있는 모래치료실 설치
 -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텃밭 설치
 - 미술치료가 가능한 공간 설치
 -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위해 수도 설치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속의 작은 놀이공간 설치
- 시설의 축소 및 연계 필요

 - 율타리 나무 등으로 펜스설치, 작은 모래시설, 텃밭, 파고라 및 벤치의 일체형 설치 및 텅쿨식물 식재로 그늘 형성, 벽면을 활용한 칠판, 의자설치로 결정
- 복지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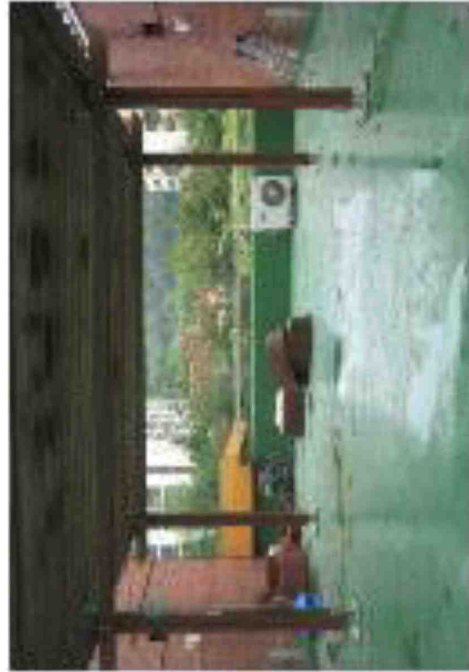
 - 바닥 방수공사 및 배수관 청소, 에어컨 실외기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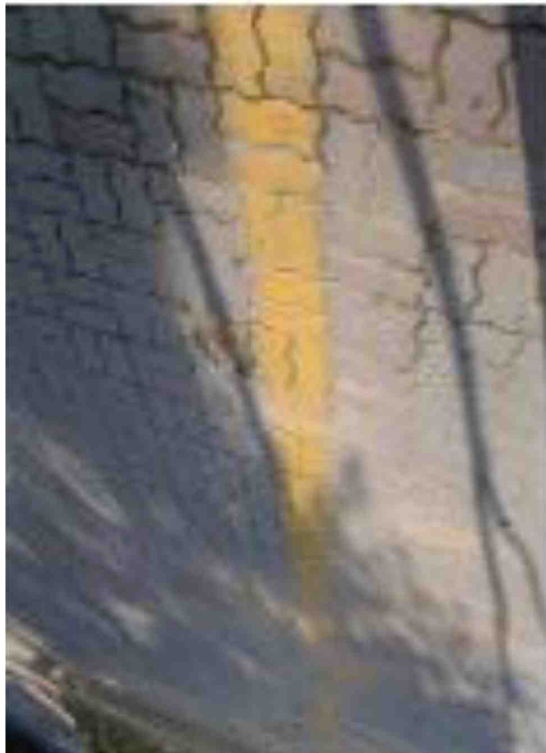
2. 방화6단지 - 숲속도서관

- '시혜적 복지에서 지역복지로의 전환', '5단지와 6단지 주민간의 일상적 연계의 필요성', '저소득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6단지 세대주 40%가 여성세대주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와 함께 일상적인 문화체험 공간 필요 (책 읽기 후식을 취하며 문화공연향유)
- 5단지과 6단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 필요



3. 편기, 이야기하기,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4. 마을장터 – 디자인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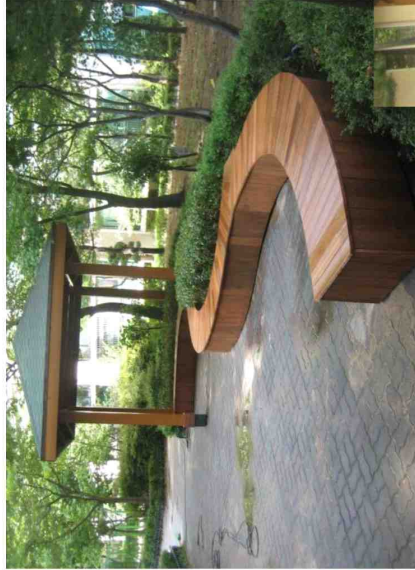
5. 문화와 당당하게 만나기

-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의식과 감성을 변화시키는 문화행위를 결합함으로써 **인프라로서의 생활문화 형성**
- 문화행위에 대한 위축과 단절을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게 함으로써 **문화와 당당하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 문화의 일상화** 도모
- 정서적 빈곤과 소외감을 약기를 통해 서서히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가정과 동시에 합동 공연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의 문화'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고, 발휘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 과정으로서의 문화'** 추구



6. 5단지 한평공원 만들기

-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의 복지관이 아니라 지역복지관이라는 성격을 주민과 공유
- 복지관을 매개로 하는 분양아파트 주민과 임대주민과의 교류 시도



Barrier Free 마을만들기

1. 삼산 주공아파트 일반현황

주 거주민 현황	동 수	세대수	평형	준공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6	1,764	11평형	1991년
계	수급자 등	비수급자		
1,764호 (100%)	1,243 (70.5%)	521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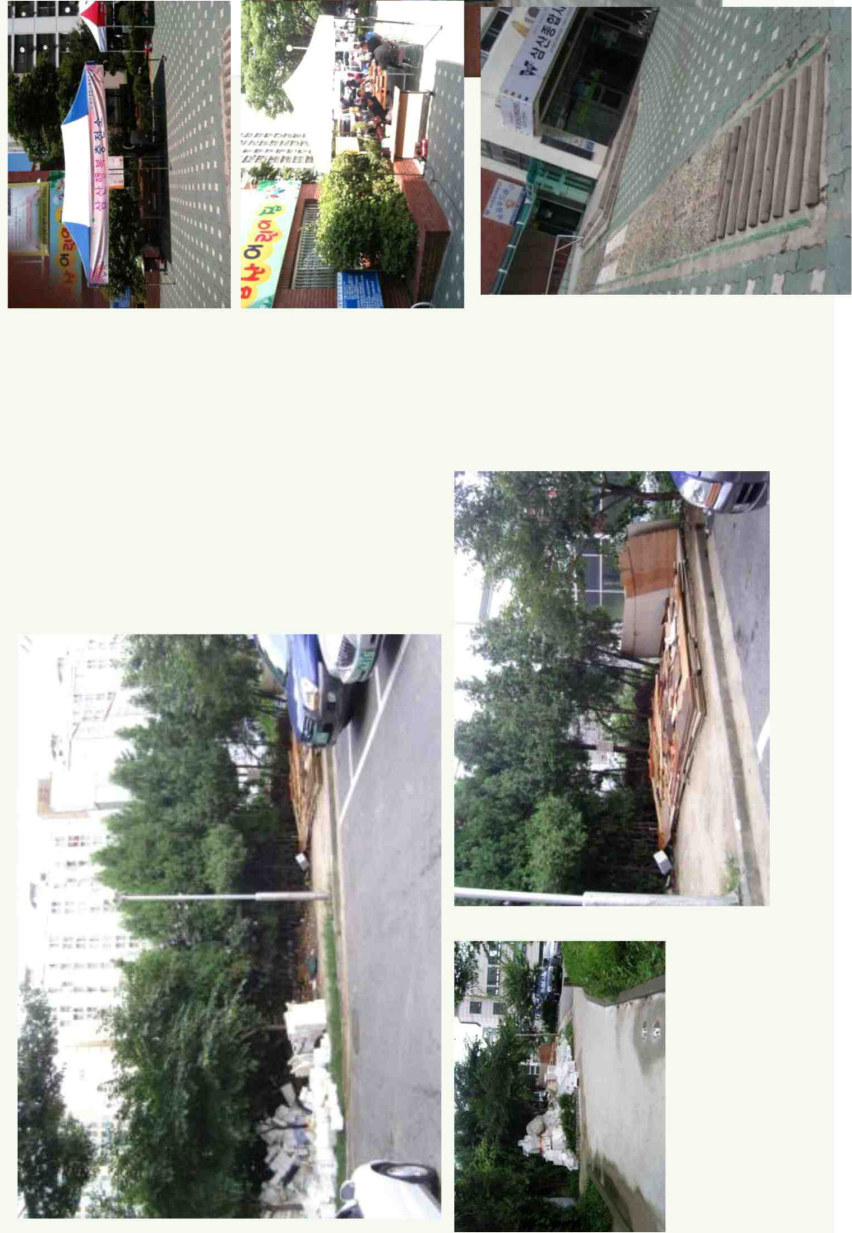
후문	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주거지와 연계 • 차량출입 제한을 위한 시설물 설치 • 미관 및 급경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동선에 따라 확보된 공간 • 계단 폭 및 높이 등 불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낮은 출입문 설치 필요 (장기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개선 필요 (장기적 계획) • 입구 주차구획선 삭제필요
	

106동 보도위 컨테이너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에서 집기 창고로 사용 • 보행공간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렬주차로 보행동선과 상충 • 상가 앞 주차로 보행동선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빈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 모색 필요 (부녀회와 협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과 상충하지 않을 방안은?
 	  

동 전면/후면 연결 계단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외 다른 접근방법이 없음 • 장기적으로 접근로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위 적치물 빈번 • 상가 앞 주차로 보행동선 불리 • 상가 앞 주차공간 정리방안 필요 : 대체공간 필요/상인동의 필요 • 보도 위 적치물 제거 필요 : 경비인력 확보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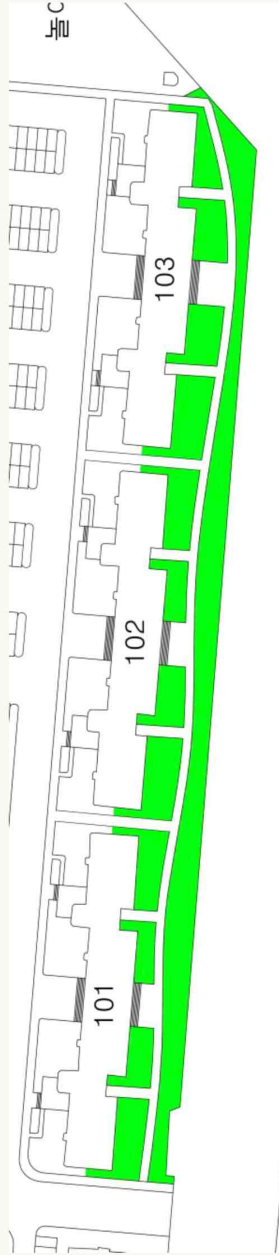
복지관 앞마당 / 재활용쓰레기장

- 앞마당 흡연 등으로 어린이집 학습권 침해
- 지압블럭 효용성 부재 및 위치 부적격
- 재활용쓰레기장의 미관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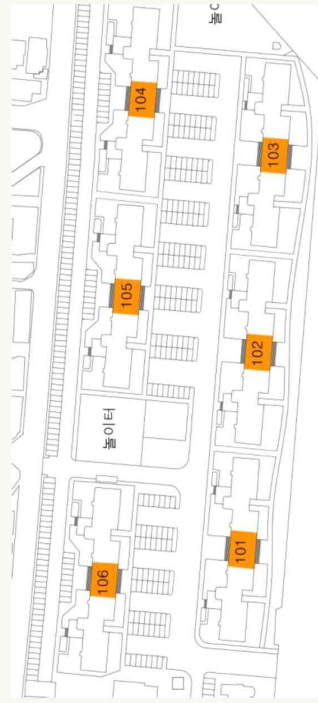
체육공원

- 이용자 별 의견 다양, 저조한 이용률
- 1층 세대 사생활과의 연계성 (목재펜스 부분 설치)
- 주민(노인 및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기구
- 시설 자체는 양호, 일부 고장난 기구 수리 필요
- 휠체어 접근 시설의 불량 (턱낮춤 등)
- 동 앞면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 필요 (시선 및 이동 차단)
- 노인/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필요 (후원/협찬 모색)



3. 내부공간 - 필로티

- 극소수 남성들 이용
- 동별 반상회 개최 (매달1회)
- 모든 접근은 계단
- 방노 등으로 악취
- 낮은 천정 / 음침함
- 관리사무소에서 리모델링 (2개동 필로티 벽면에 대리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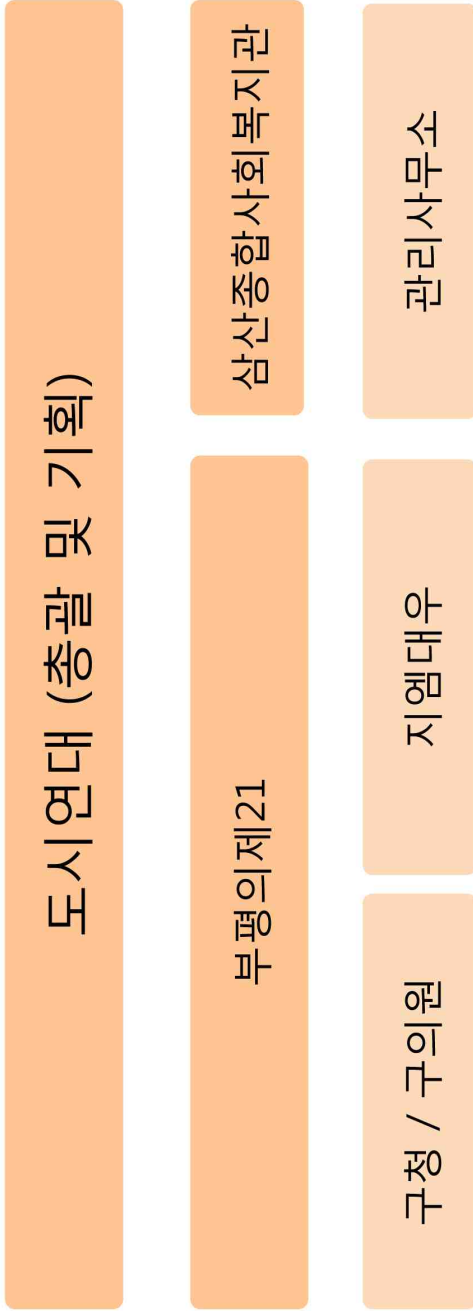


3. 내부공간 - 1층 베란다

- 주민들(주로 여성)의 담소 및 부업공간으로 활용 중
- 휴게 및 작업공간으로 정비 필요



IV. 지역복지 네트워크 협의



- 도시연대와 부평의제21 협의
- 부평의제21 문화복지분과 협의
- 도시연대와 부평의제21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제안
- 도시연대+부평의제21+삼산종합사회복지관 협력 진행
- 구청 및 구의원과 협의 (향후 정책화)
- 지엠대우와 협의 (지역복지와 지역 기업의 역할)
- 관리사무소와 협의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
- 금연구역 지정



영구임대아파트 마당 일부 일부 구역 만들기



영구임대아파트 마당 일부 금연구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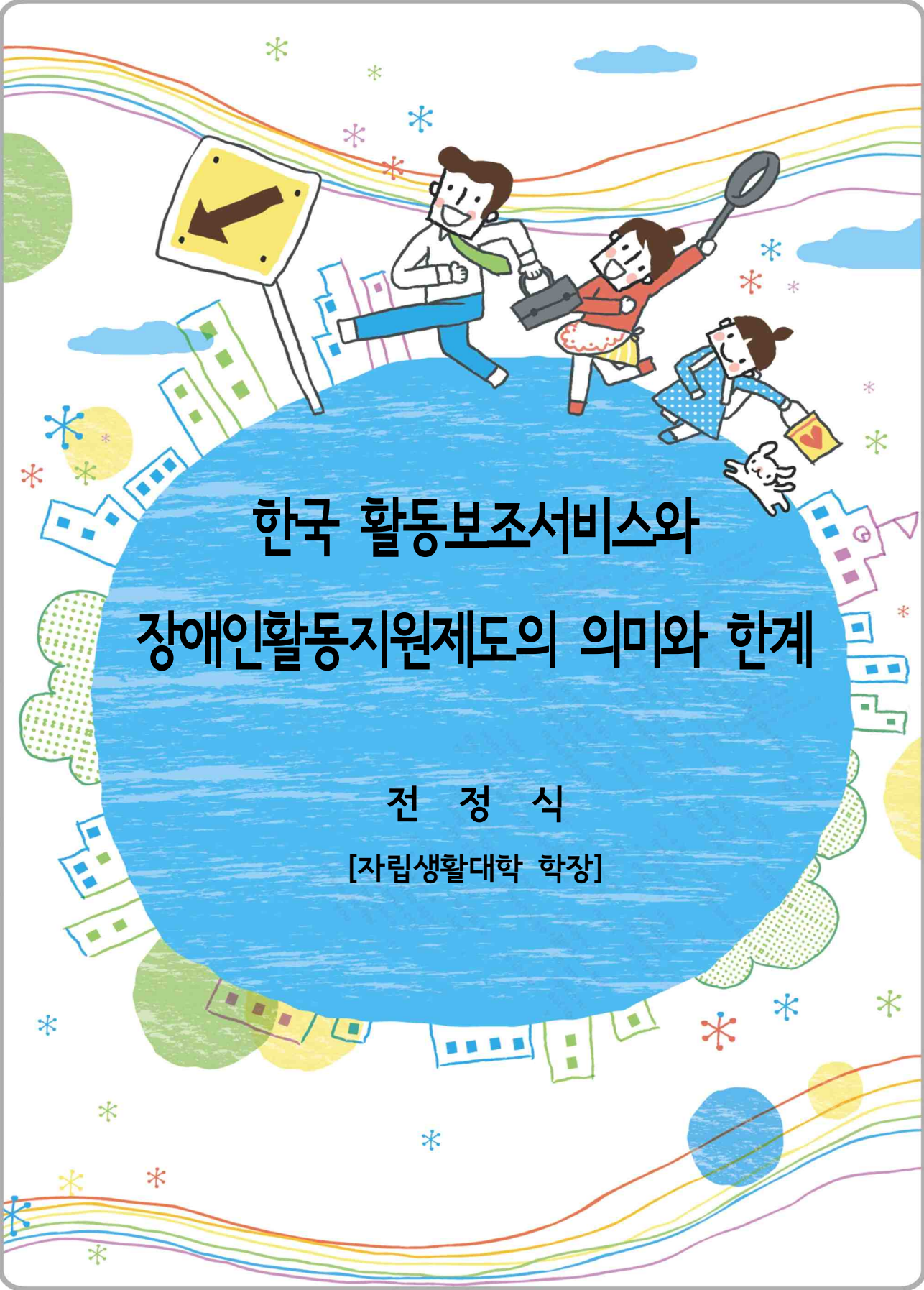


영구임대아파트 마당 일부 금연구역 만들기





무장애마을만들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한국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미와 한계

전 정 식

[자립생활대학 학장]

한국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미와 한계¹⁾

전 정 식 (자립생활대학)

의무와 사랑

활동보조의 역사는 길고도 길 것이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 고열이 며칠 동안 이어진 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어린 아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이가 먹던 고구마를 덩석 물어 먹고 사지가 마비된 청년, 어느 겨울날 자그마한 집안일 하나에 화 한번 버럭 냈다가 머리의 실핏줄 몇 가닥 터져 뇌졸중으로 쓰러진 중년 아주머니가 있었던 그 때부터 활동보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을 것이다.

활동보조 역할 수행자와 그 수행 형태는 세월이 가며 조금씩 달라지면서 다양화되는 듯하다. 지금까지 이어오는 바이지만 특히 농경산업 단계에서는 문중 혹은 가족이 몸이 불편한 사회구성원의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그 활동보조는 어느 면에서 집단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차피 생산 현장과 장애인이 살아가는 공간이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장애인과 씨족 구성원들 상호 간에 상호 주시와 상징적-감성적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기에 장애인의 활동보조는 씨족 전 구성원의 관심과 수행 가능성 속에서 진행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상황은 달라진다. 혹자가 말하듯 산업화 시기는 신유목민의 시대이다. 토지에 긴박되어 살아가던 때가 가고 시장과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씨족은 해체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모조리 흩어져 가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산다. 그들의 노동현장과 중증 장애인의 삶의 현장은 이제 더 이상 가시적 혹은 가청적 거리 내에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은 가족을 대신할 다른 활동보조 역할 수행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사회적 유한 계층, 소위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전화통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1) 이 글은 여러 IL 활동가들(김준우, 서기현, 이광섭, 이응범, 이현정, 최미영, 최용기)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이다. 운동의 현장에서, 세미나에서 혹은 전화로 인터뷰에 응해주고 한국 IL PAS의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전해준 여러 활동가 및 IL 실천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으로부터 받든, 자원봉사자로부터 받는 공통되는 부분은 무급이라는 형식이다. 무급 활동보조는 돈이 안 들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눈치 보기라는 부담이 따른다. 무급 활동보조는 대부분 활동보조 이용자 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활동보조의 시간, 방법, 내용 등 전반에 걸쳐서 자원봉사자의 헤게모니가 관철된다. 그 어떤 하찮은 봉사 요구를 위해서도 이용자는 자원활동자의 심기를 살펴야 한다. 눈치 보기를 넘어서서 무급 활동보조 형식이 지니는 문제점은 그 활동보조의 기반인 의무와 사랑에 대해 이용자가 느껴야 하는 미안함과 부담감이다.²⁾ 자원봉사자는 사랑 충만으로 다가온다지만 녀살 좋은 몇몇 당사자들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때론 그 구차한 처지에 스스로가 비참해 질 따름이다.

무급활동보조의 결정적인 한계점은 이런 미시 권력적인 차원만이 아닌 인력 조달에서의 양적 부족에서도 찾아 진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계층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그 중에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해본 사람은 알듯이 자원봉사 1시간 받기 위해 수 시간의 전화 작업이 필요할 때조차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급활동보조의 양적 부족 현상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즉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간다.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속에 가구주 1인의 소득으로는 현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 구성원 대다수가 뭐라도 해서 벌어 와야 가정경제가 돌아간다. 그나마 줄어든 자원봉사자 풀에 남아 있는 일부 참여자들마저 몇 번의 힘든 육체노동 활동보조를 겪고 나면 곧장 활동방식을 바꾼다. 음악, 포크댄스 등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찾는다. 그런 기능적 달란트가 없는 이는 장애인을 직접 보조하는 일이 아닌 빨래, 설거지 등 일회성의 비접촉적 작업으로 자원활동의 내용을 제한한다.

일방성

유급 활동보조의 출현은, 의무와 사랑에 기반한 무급활동보조의 한계성을 돌파하기 위한 현실적 요청의 반영이요, 활동보조의 사회화를 알리는 전조인 셈이다. 사람들은 종종 잊고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구성은 노인층에 존재한다. 중년까지의 장애 발생은 어느 정도 특수성이겠지만 노년에서의 장애 발생은 일반성이다. 효 사

2) 자원봉사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IL PAS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용기(2003) "한국의 중증장애인 PAS제도의 과제와 전망". 삼육대학교(2003). p.134-136

상이 충분해서든, 정치적 표가 가장 많은 층이어서든, 아무튼 한국에서의 유급활동보조의 시작은 이들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듯하다. 노인수발지원제도로 시작된 유급활동보조는 가정도우미혹은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을 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로 그 시행 대상이 넓혀진다.³⁾ 유급활동보조의 출현은 무급활동보조가 지닌 비지속성과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심적 부채감을 경감하는 효과를 보인다. 집안 시설에서의 빨래, 청소, 반찬 장만 등 최소한의 가사 일상은 안정적으로 대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도우미 형태의 유급활동보조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활동보조 영역이 협소하다.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구청에서 파견되는 가정도우미의 주된 활동보조 영역은 집안일로 한정되어진다. 음식 만들기, 청소, 빨래, 시장 보기 등 가사보조에 국한되어 있고 접촉적 보조는 물 마시기, 밥 먹기 등 간단한 보조로 제한된다. 간혹 목욕보조도 하지만 여성 장애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정도우미 유급활동보조의 또 다른 한계는 정부 및 가정도우미 주도성이다. 이용자 장애인은 주체적 통제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기는 어렵다. 시간적 차원에서든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가정도우미 스케줄에 맞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시간이 정해진다 해도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 서비스를 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양으로 받는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일의 양이 끝나면 그것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일의 양도 한 두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시간도 주말과 주일에는 받을 수 없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가정도우미는 구청에서 돈을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만 진정한 소비자일수는 없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구청에서 주는 대로, 가정도우미가 해주는 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⁴⁾ 가정도우미 유급활동보조는 의무와 사랑의 활동보조 수준은 벗어났을지언정 여전히 일방적 활동보조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3) 유급활동보조서비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준(2003) “한국의 중증장애인 PAS제도의 과제와 전망(토론문)”. 삼육대학교(2003). p.185 참조

4) 이상 가정도우미 제도의 한계성 내용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활동보조서비스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정리한 것이다.

PAS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00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우도우미사업을 한시적이거나 진행하고, 2001년 정립회관이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을 때⁵⁾, 그 목표지점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터이다. '스스로 세상 속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통제하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활동보조의 이용,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지역에 뿌리 내려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목표 지점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확보된 면이 있다. 특히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립생활지원사업 결정은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한 활동보조서비스(이하 IL PAS)'의 성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공동모금회 지원 IL PAS는 지역에서 장애인의 탈가정의존, 능동적 사회참여라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무엇보다도 시설에서의 삶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지역 주민, 가족, 그리고 당사자에게 예시했다.⁶⁾ 그리고 2007년 IL PAS는 당사자들이 주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시범사업 성격을 넘어 전국 사업으로 전개된다. 의무와 사랑이 아닌 유급 공적 서비스로서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범사업형태에서 법적 기반과 시스템을 가진 사업으로 제도화 된다. 제도의 이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어 시행된다.⁷⁾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고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영역별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및 산정방법」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그 인정점수에 준하여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매겨진다.

5) 이현준(2003:185)

6) IL PAS에 의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경미(2004)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이용 경험에 대한 연구", 홍정례(2005) "센터 내에서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참조.

7) 이하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보건복지부. 2011. 201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7호, 제2011 - 108호, 제2011 - 109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2 20:50:06 참조.

인정조사표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 동작영역	1. 옷 갈아입기	① 0, ② 10, ③ 20, ④ 40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3. 식사하기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5. 옮겨 앉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6. 걷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7. 화장실 사용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계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15	
	3. 식사준비	① 0, ② 10, ③ 20, ④ 30	
	4. 집안일	① 0, ② 5, ③ 10, ④ 15	
	5. 빨래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6.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15	
	7. 금전관리	① 0, ② 5, ③ 1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3, ③ 5, ④ 10	
	계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1. 휠체어사용	① 0, ② 15, ③ 30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
	2. 청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3. 시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4. 인지기능	① 0, ② 30, ③ 60	
	5. 정신기능	① 0, ② 30, ③ 60	
	계	60점	
총점		445점	3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1등급	380점~445점
2등급	320점~379점
3등급	260점~319점
4등급	220점~259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활동지원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급여

1) 18세 이상 수급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860,000원	690,000원	520,000원	350,000원

2)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등 급	1등급	2등급
기본급여	520,000원	350,000원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6,000원
③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④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6,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3,000원

-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

- 가.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 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 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 라.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마.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 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기본급여에 대한 정액 본인부담금 : 2만원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나.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 등에 거주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4,000원으로 산정한다.
-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 3)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1)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1,290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4,160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바.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사.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28,70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③ 60분 이상	44,600

-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의미 - 개별예산제와 소비자중심전달체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은 여러 의미들을 지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개별예산제(Direct Payment, Individualized Funding, Personal Budgeting) 도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복지정책이 공급자중심자원전달체계에서 소비자중심자원전달체계로 전환됨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같은 장애인정책에 쓰이는 자원이라도 그것의 전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전달비용만 과대하게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은 전달비용으로 장애인들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정책효과를 내는 전달체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는 이미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적해왔으며 아래의 인용문은 이를 짚고도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정부는 항상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었고 서비스제공자는 그 돈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의 필요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에 맞지 않는 서비스로 끝나버린다. 개별예산제에 의해서, 정부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준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선택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지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개별예산제방식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개별예산제는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그들에게 최상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파워를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자기권익 옹호재단 편.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생활서비스 자금지원방식은 자금을 정부가 장애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케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총액자금지원(BF: Block Funding)이라고 부른다. BF는 서비스공급자중심이다. 장애인이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개별예산제는 장애인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자

중심 자원전달체계를 채택한다. 장애인은 개별예산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케어를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제공자에게서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도 자기가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기존에 받는 개별예산제지원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라도 이동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예산제는 서비스제공자와 케어제공자들이 장애인에게 좀더 책임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그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서비스/케어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예산제는 개인이 계약상의 위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기 결정력과 역량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는 개별예산제를 통해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당사자들의 욕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별예산제 시스템 하에서는 각 개인에 따른 특정한 지원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장애인들의 욕구 변화에 따라 디자인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제도는 PAS,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아서 개별예산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 보다 많은 공급자중심장애인정책들(예: 생활시설입소 등)이 활동지원제도 안에 묶이게 될 것이고 그 만큼 장애인의 선택권은 늘어날 것이다.

한계 - 선별복지와 당사자배제

그러나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당사자집단의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 집단의 계산합리성 혹은 정책합리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모습이다. IL이념은 명목적으로만 남고 정부의 예산절감과 선별적 복지 정책만이 도드라져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혜택의 감소로 나타난다.⁸⁾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자부담 폐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 제도시행을 강행했다.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안을 반대하고, 고시안개정 투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고시안 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그리고 2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8월 8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8월 12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규탄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연대회의는 몇 차례 복지부 면담을 가졌으나 복지부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11. 8. 31. 장애계 동의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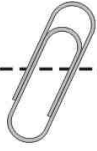
일관했다. 장애계의 거센 항의에 못 이겨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던 활동지원제도 TFT 실행위원회 회의를 8월 24일 제안하였고 복지부는 그 자리에서 기존 고시안보다 약간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선안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을 보존하는 수준에 그치는 안이었다. TFT 실행위에 있던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0시간(현 180시간)으로 상향, 시간당 수가를 9,000원으로 인상,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그리고 활동보조인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을 재차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요구들을 묵살하고 부처의 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TFT 실행위 회의에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복지부의 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1년 8월 31일 자신들의 안을 그대로 고시했다.

고시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소득별 선별복지라는 보수과정부의 복지이념이 투영된 정책이다. 소득별 자부담 상향은 중산층가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주저케 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 소득이 있다고 장애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시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공공복지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가족복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국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사자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직 한국의 장애인정책형성은 협치가 아닌 일방적 행정주도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장애인집단의 정치세력화, 정책세력화가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협치의 길은 멀고 그 만큼 자립생활과 소비자중심 자원전달체계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래적 이념 실현 또한 멀어 보인다. 하지만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자립생활운동 당사자들의 연대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힘이 조직된다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또 다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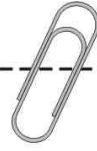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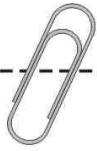
- 김경미, 2004.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이용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학술대회 자료집』
- 김선윤, 2004.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 송파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2004)
- 김준우, 2005. "한국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과제". 프랜드케어(2005)
- 박찬오, 200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운동 방향".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한.일 자립생활세미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 2011. 201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 삼육대학교, 2003.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장애인자립생활 국제세미나
- 송파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2004.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보고대회 자료집
- 양효정, 2005.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과제". 프랜드케어(2005)
- 이연희, 2005. "동료상담가와 활동보조인코디네이터와의 관계". 프랜드케어(2005)
- 이현준, 2003. "한국의 중증장애인 PAS제도의 과제와 전망(토론문)". 삼육대학교(2003)
- 전정식, 2004.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조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정식, 2008.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 인권포럼.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모니터링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자료집.
- 정립회관, 200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자기 개발 세미나 자료집
- 정중화, 2003. "장애인 PAS제도 구축을 위한 모델연구". 삼육대학교(2003)
- 정희경, 2005.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현재와 향후과제 및 전망". 프랜드케어(2005)
- 최용기, 2003. "한국의 중증장애인 PAS제도의 과제와 전망". 삼육대학교(2003)
- 프랜드케어, 2005. 전국 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 워크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 홍정례, 2005. "센터 내에서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프랜드케어(2005)
- 주숙자, 2005.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과 제정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Crew, Nancy M. and Irving K. Zola. 2003.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정립회관
- Dejong, Gerben.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E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인터뷰: 김준우, 서기현, 이광섭, 이응범, 이현정, 최미영, 최용기 (가나다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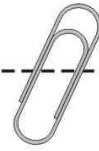


메 모





메 모





수원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이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배경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
-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핵심키워드 :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자본, 네트워크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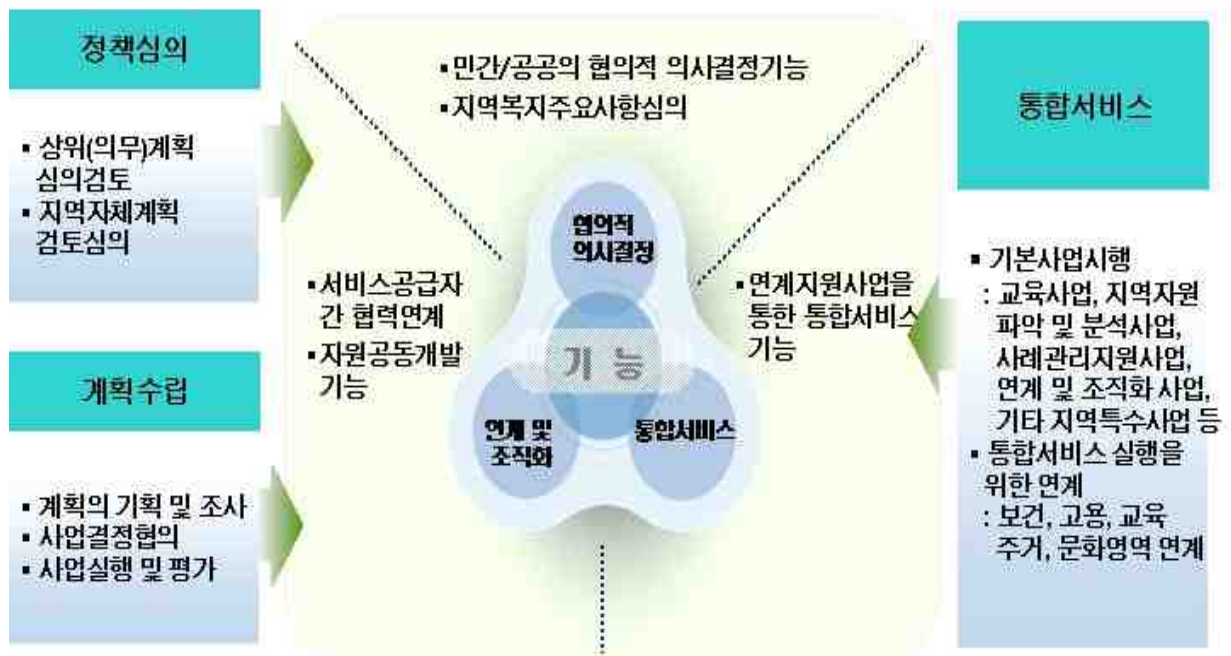
2. 구성 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도모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3. 구성 및 조직도

구 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인원	20 ~ 30명 (현 25명)	20 ~ 30명 (현 25명)	분과별 20명 내외
위 축	수원시장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임 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해당기간의 보직기관과 같음
대 상	공공	시장, 담당국장, 보건소장	관련 부서 팀장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 보건의료대표 교육분야 대표 종교분야 대표 고용, 주거분야 대표 주민·공익단체대표 학계전문가등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 기관, 고용, 주거, 자활분야, 교육분야, 공익단체, 학계 등
임 원	공동위원장(시장, 민간) 부위원장	위원장(민간) 공동부위원장	공동(민·관) 실무분과장 총무

4. 주요기능



□ 협의적 의사결정 기능

-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적으로 의사결정 및 심의

□ 연계 및 조직화 기능

- 서비스 공급자간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연계 기능
- 지역내에 있는 자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
- 사업별로 자원간 연계 통합관리 및 필요한 영역의 자원 개발

□ 통합서비스 기능

-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의 의견수렴을 종합하는 기능
- 협의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진행의 문제와 방향을 점검

5. 협의체 기본현황

□ 구성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일자 : 2005. 11. 28
- 구성인원 : 247명
 - ▶ 대표협의체 : 25명(공동위원장, 부위원장)
 - ▶ 실무협의체 : 25명(위원장, 공동부위원장)
 - ▶ 실무분과 : 12개 분과 222명(실무협의체 위원 포함)

대표협의체(25명)
- 공동위원장 수원시장 염태영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 부위원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능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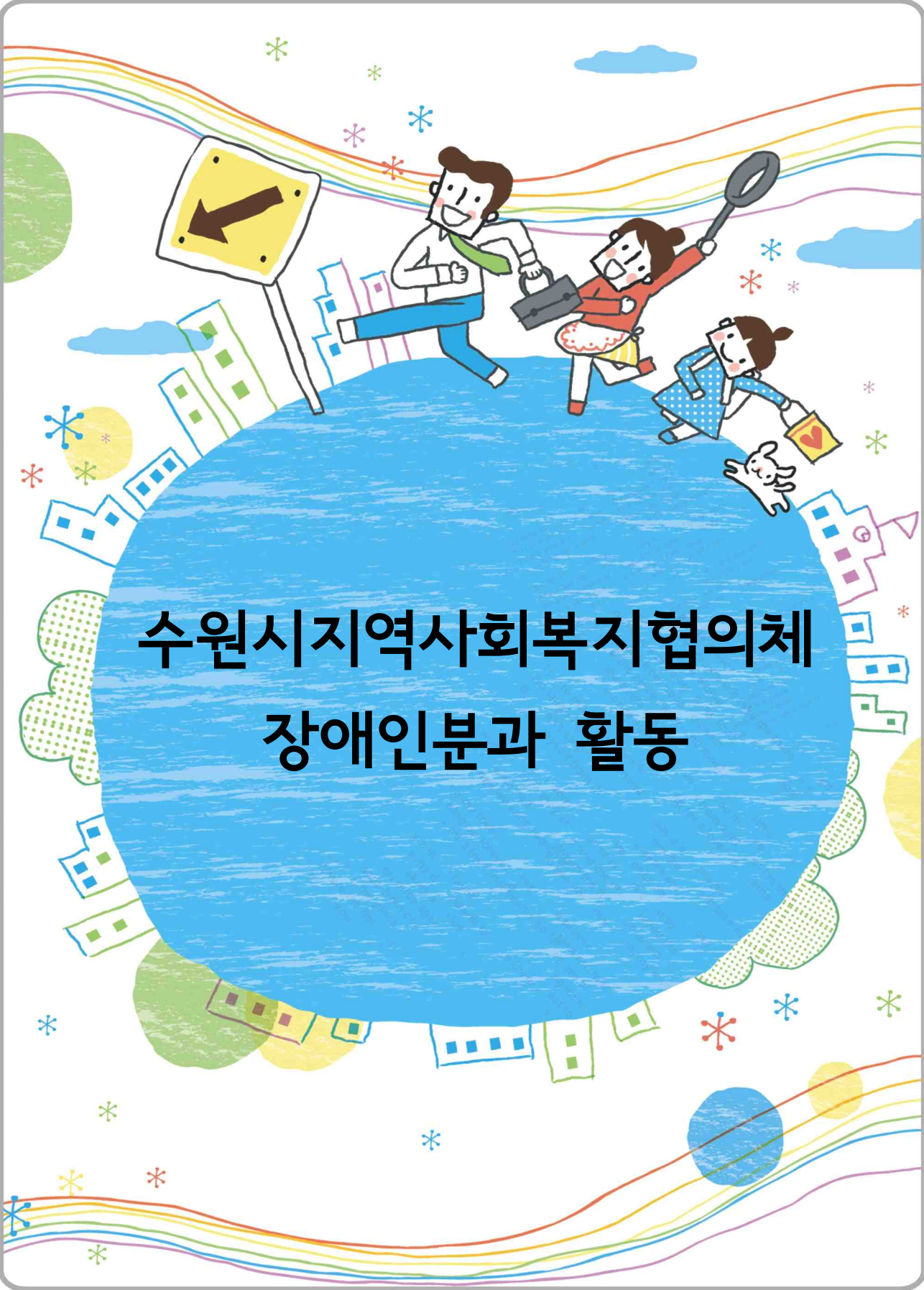
실무협의체 (25명)
- 위원장 우만지역자활센터장 강근수 - 공동부위원장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용덕 버드내노인복지관 부장 한해영

↑ ↓

실 무 분 과 (12개분과/222명) - '11. 6월 기준												
분 과	통합 서비스 지원분과 (16명)	지역 분과 (14명)	자활 고용 주거 분과 (17명)	아동 분과 (18명)	노인 분과 (21명)	장애인 분과 (19명)	여성 가족 분과 (21명)	영유아 분과 (16명)	교육 분과 (10명)	청소년 분과 (22명)	보건 의료 분과 (15명)	사회 공헌 분과 (15명)

□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25 종합운동장 야구장내 127호
 (우편번호 442-070)
- 전화번호 : 031)228-4580~5, 235-9050
- 팩스번호 : 031)248-1906, 228-3792
- 홈페이지 : <http://www.swwelfare.org>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활동**

□ 2006년도 장애인분과 활동

1. 제1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장애인복지부문 수립

2. 장애인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사업명 :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기관) 종사자 교육
- 일시 : 2006. 11. 14
- 참석인원 : 60명
- 사업내용
 - 교육내용
 - 외국 장애인복지의 현재(이상진 평택대 교수)
 - 수원시장애인 복지의 변화와 미래(최종혁 강남대 교수)
 -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과제(김대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팀장)
 - 질의 응답(좌장: 강병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지사장)



□ 2007년도 장애인분과 활동

1. 수원시 활동보조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사업일시 : 2007. 6. 8, 13:30~15:40
- 장 소 :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
- 참석인원 : 46명
- 참석대상 : 장애인시설(기관)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공무원
- 내 용 :
 - ▶ 수원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으 정책방향
- 심언형(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 ▶ 수원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정책방향
- 이진영(수원시장장애인복지관 팀장)
 - ▶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이 바라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 김진규(수원IL센터 사무국장)



2.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일시 : 2007. 11. 8. 14:00~16:00
- 장 소 : 수원시장애인복지관 강당
- 인 원 : 약 70명
- 대 상 : 수원시 장애인시설 및 단체 종사자, 특수학급(교) 교사, 장애인, 장애인부모,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주요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
배용호(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 2008년도 장애인분과 활동

1. 수원시 장애인 이동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기간 : 3월 ~ 11월

○ 주요내용

▶ 수원시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조사

- 일자 : '08. 7. 7 ~ 7. 11

- 조사방법 : 택시 동승하여 설문조사

아주대 재활의학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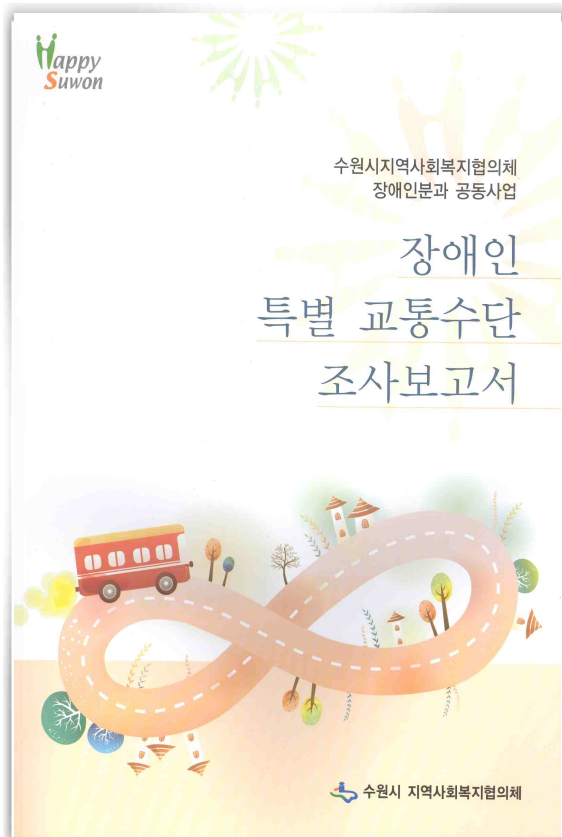
▶ 타지역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현황 조사

- 천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방문('08. 10. 14)

- 성남시청 교통정책과 방문('08. 10. 23)

-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방문('08. 11. 5)

▶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조사보고서' 발간



□ 2009년도 장애인분과 활동

1. 지역복지계획 평가를 위한 장애인분과 워크숍

- 일 정 : 2009. 4. 28 13:00 ~ 20:00
- 장 소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대 상 : 장애인분과위원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해,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13:00~13:30 : 등록

13:30~15:30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강의

15:30~16:30 : 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16:30~18:00 : 장애인복지계획에 대한 강의

18:00~20:00 : 만찬



□ 2010년도 장애인분과 활동

1. 제2기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장애인복지부문 수립

2. 장애인분과 & 영유아분과 공동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0. 10. 1(금) 9:00~18:00

○ 장 소 :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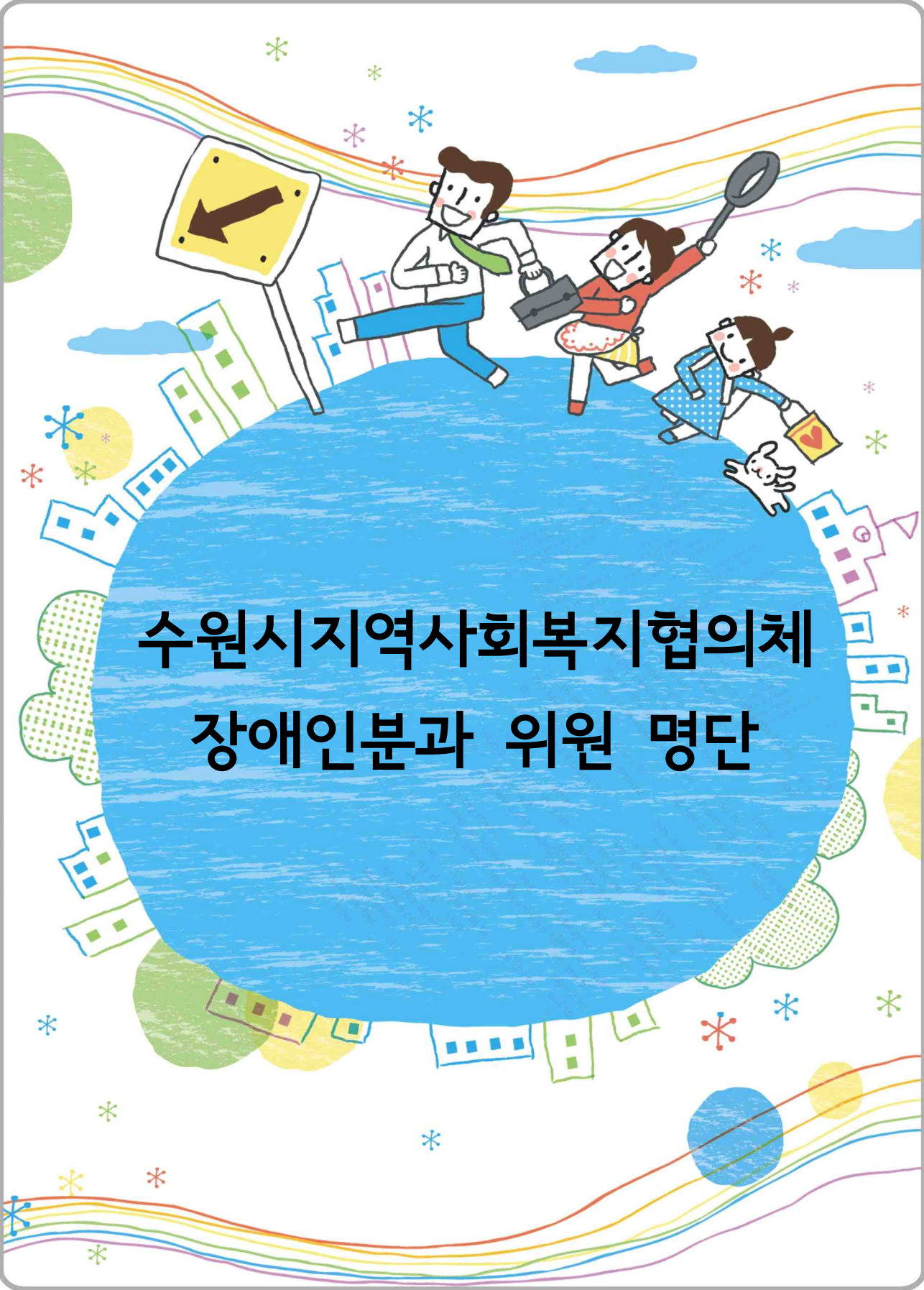
○ 참여대상 : 장애인 · 영유아분과 위원

○ 주요내용

- 특수장애아동의 이해 (강연)

- 명상, 요가, 건강음식체험, 트랙킹 등 (선마을 무료 프로그램 이용)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 명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전화
위원장(공공)	최종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228-2212
위원장(민간)	허미자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감사	216-3747
총무	김장수	연무사회복지관 팀장	245-7576
위원	강정윤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팀장	296-6255
"	김경희	새봄사회복지시설장	251-0557
"	김유라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팀장	247-0888
"	김범진	엘림작업활동시설 시설장	695-6530
"	김종철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수원지부 임원	269-0312
"	김진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243-1732
"	박성자	노인장애인과 요양보장팀 주무관	228-2575
"	송종근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차장	229-4058
"	원종임	수원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898-5675
"	이강조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548-5601
"	이영설	한사랑복지센터장	256-1331
"	이재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부장	253-7723
"	이효범	중앙침례교회 복지사역국 전도사	229-9064
"	인성희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43-2852
"	조계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시지회 과장	242-6101
"	한미옥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228-3217

※ 장애인분과 담당 : 임복희(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228-4581